

대구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나3144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나31447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가단14961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경아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안혜림

변론 종결2024. 10. 23.

판결 선고2024. 11. 20.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가단14961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2022. 10.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4행의 "부동산을"을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망인 사망일인 2010. 2. 5.경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2. 11. 2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9153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일자가 2022. 10. 1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2010. 2. 5.은 민법 제1015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함을 표시하기 위한 취지에 따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제2. 나.항1)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와 다르게 피고가 주장하는 2010. 2. 5.경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4행의 "L"를 "C"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8행의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망인을 전적으로 부양하였는데 피고의 이와 같은 기여분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하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한 것으로 C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6면 9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먼저 C의 특별수익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K토지에 관하여 2005. 8. 5. 매매를 원인으로 2005. 8. 5.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3호증(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 4,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C의 사업자금으로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의 기여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는 단지 망인 주거지 근처에서 살았을 뿐 동거하면서 망인을 직접 보살핀 것은 아니고, 달리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의 망인 부양을 근거로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 부양을 이유로 한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재덕

판사박만호

판사신안재

별지

2.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나.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